

종합·해설

광주·전남 재·보선사태 오나

민주 국민경선 결과 오류 등 곳곳 잡음 재심·가처분 신청... 고소·고발도 줄이어 박지원 "적어도 10여명 이상 수사 대상"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결과, 곳곳에서 오류와 부자유가 나타나면서 경선 후폭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선이 본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경선이 펼쳐진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상당수 지역에서 검·경의 수사나 중앙당의 재심이 진행 중이고 일부에서는 가처분을 신청했는가 하면 고소·고발이 줄을 이어 재·보선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 북구에서는 국민경선 선거인단 명부 오류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모바일 투표 결과 불일치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선거인단 명부 오류가 모두 496

명이나 발견된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투표 결과, 컴퓨터 하드 내용과 중앙당에 제출한 CD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앙당에 제출된 광주 북구구의 모바일투표 결과에 대한 일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된 것이다.

이 경선에서 패배한 최경환 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지난 15일 법원에 경선 당선자 결정 효력 정지 및 공천장 교부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광주 북구갑에서는 이형석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강기정 후보의 선거 홍보물 무단 절취 의혹을 제기하며 상호 고소·고발사태로 번졌으며 지난 16일에는 강 의원의 후보

자적 박탈을 중앙당에 요구했다. 광산갑 경선에서 180표 차로 석패한 전갑길 예비후보도 선거인단 오류가 340명이나 된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중앙당에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다.

이 외에도 지난 14일 전남지역 경선 과정에서 동원 경선과 관련된 선관위 및 상대 후보 측의 적발로 검·경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전남도 선관위는 당시 영광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던 선관위 직원 A씨가 '영광군 도 지역에서 승합차량을 이용해 경선선거인을 투표소로 계속 수송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사진을 촬영한 뒤 관련자 B씨에게 조사를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해 B씨 등 관련자를 고발했다.

또 고흥·보성 지역구에서는 C후보 측이 "상대 후보 진영이 관광버스와 영업용 택시를 이용, 노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구했으며, 나주·화순 지역

구에서는 D후보 측이 "다수의 선거인이 향응을 제공받고 설악산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집단으로 현장투표소에 들러 표를 행사했다"며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12일 열린 광주지역 현장투표에서도 북구갑과 남구 선거구에서 "동원 경선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경선 관련 오류가 다수 발견되면서 중앙당 일각에서는 불법 상황이 명백할 때는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오류가 심각한 경선의 경우는 무효화한 뒤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재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최고위원은 "그 동안 수십 차례 선거인단 경선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도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경선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태도 적어도 10여명 이상의 당선자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발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희철 민주통합당 의원(왼쪽)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관악을 단일화를 위한 전화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 76곳 오늘 결과 발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76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국 경선지역 76곳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경선을 실시, 19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경선지역은 모두 76곳. 서울 21곳·

경기 23곳·인천 5곳·영남 21곳·충청 1곳·강원 3곳·제주 2곳 등이다. 경선은 ARS조사(50%)와 RDD(임의전 화결기), 전화면접(50%)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심 지역은 서울 관악을(민주당 김희철, 진보당 이정희), 은평을(고연호-천호선), 도봉갑(이재근-이백만), 노원병(이동섭-노회찬), 경기 군포시(이학영-송재영), 고양갑(박준-심상정) 등이다.

양당 간 상당수 지역구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당은 야권연대 경선지역에서 15석 이상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당의 핵심관계자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결과, 진보당은 전라지역을 중심으로 '10+ a 지역'에서 경합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0여 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아름다운 승복

민주 무안·신안 경선 박빙의 차 분루 서삼석 후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과 관련, 재심 청구는 물론 고소·고발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실시된 무안·신안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274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분루를 삼킨 서삼석 예비후보가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 귀감이 되고 있다.

18일 서삼석 예비 후보 캠프에 따르면 서 후보는 모바일 투표에서는 이윤석 국회의원에 360표 차이로 앞섰으나 현장투표에서는 634표 뒤져, 최종 합산 결과 274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다.

개표 직후 서 후보 핵심 참모들은 현장 투표 과정에서의 동원 의

혹 등을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 청구 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서 예비후보는 "한 표라도 뒤진 것은 패배"라며 깨끗이 결과에 승복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결과를 겸

허하게 받아들이며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며 "저의 패배는 온전히 저의 부족함의 결과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당의 승리와 대선에서의 정권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동원 경선 파문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 예비후보가 깨끗하게 결과를 승복한 것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서 예비후보의 담백한 행보는 향후 정치 역정을 뒷받침할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사무총장 후임에 박선숙 의원

민주통합당 박선숙 의원이 '버리 연루자 공천 논란' 끝에 사퇴한 임종석 사무총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박 선 의원은 지난주 타결된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협상에서 민주당 실무대표를 맡아 4·11총선에서 전국 단위의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주역이다. 공천 과정에서 서울 동대문구 갑 전라공천 제안을 받았으나 "야권

연대를 위해 나부터 버리겠다"는 취지로 고사하며 불출마를 택했다.

한병숙 대표는 임 전 총장이 사의를 굽히지 않고 고심 끝에 '박선숙 카드'를 골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통민주-제3신당 합당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한광욱 전 의원 등 구(舊) 민주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정통민주당과 2040 청년이 주축이 된 제3신당이 16일 합당했다.

양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합당식을 갖고 합당 신당의 당명을 정통민주당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 대표는 정통민주당 대표인 한광

욱 전 의원과 제3신당 문순호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가기로 했다.

정통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제3신당과 통합을 이루면서 신·구세대가 조화를 이룬 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한국 정당사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무소속 출마맨 선거권자 300~500인 추천 받아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자가 후보등록을 하려면 오는 23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에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

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50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는 반드시 관할선거구위원회의 관인이 찍힌 추천장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

천받는 행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이나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 대상 채권 |
|-----------|--------------------------------|
| 상거래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
| 매매 채권 |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
| 금전소비대차 채권 |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빚돈 등 |
| 임차권 채권 | 주대,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자 대여료, 보증금 |
| 임금 채권 | 급여(정규, 일용) |
| 가사 |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
| 구상권 | 보종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차) |
| 기타 | 저작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광주지사 영업지원 모진 062-606-9006
순천지점 영업지원 모진 061-722-1930

SM 슬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6
영업팀장 (문채준) 010-5311-0086

지역경제부 공고 제2012-130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단장 공모

지식경제부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단장"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취위 및 임기**
 - 직 위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임원
 - 직 책 : 단장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종료시까지
 - 선발인원 : 총 4인 (권역별 1인 : 충청, 호남, 대경, 동남)
- 응모자격**
 - 지역산업·지역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단장으로서의 비전제시 및 리더십, 교양과 인품 등의 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 지역연고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 제출서류**

(1차 서류심사용)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 소정양식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를 참고

(2차 면접심사용) 서류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서류접수 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12. 3. 19(월), 09:00 ~ 4. 2(월), 18:00
 - 제출방법 : 등기우편(결함에 지원서류 재증명기) 또는 방문접수
 - ※ 1차 서류심사용 자료는 등기우편과 아울러 이메일(kyz@kiat.or.kr)로도 송부
 - 접 수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층 광역선도산업팀
 - ※ 서류일체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
- 심사방법**
 - 자립단장 인선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개별정보)를 대상으로 실시
- 최종결과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 인선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후보자 모집을 재실시 할 수 있음
 -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02-2110-560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02-6009-3761)

2012년 3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사건명 |
|-------------|-----------|-------|-------------|-----------|-------|-------------|-----------|-------|
| 2011고단 6418 | 진우물류 주식회사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61 | 주식회사 창진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1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0 | 주식회사 수양통상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1 | 유한회사 영진통상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67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2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0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3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1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4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2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5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5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6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7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3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6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8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7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59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7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60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7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61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73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62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2011고단 6744 | 유한회사 국제통운 | 도로법위반 |
| 2011고단 6474 | | | | | | | | |